

운영관리규정

한국보험계리사회 내규 제2호

제 정 1991. 08. 26.

최근개정 2026. 03. 27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계리사회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회의 업무처리는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운영) 본회는 효율적인 회 운영을 위해 정관에서 정한 위원회, 사무국 외에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2장 위원회

제4조(종류) ①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회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6.03.27.>

② 본회 회무를 추진·실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(이하 “산하위원회”)를 둔다. <개정 2026.03.27.>

1. 계리실무기준위원회
2. 회원관리위원회
3. 재무위원회
4. 교육위원회
5. 국제위원회
6. 보험회계위원회
7. 리스크관리위원회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외 한시적으로 특정 업무를 추진·실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5조(설치) ①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이사회 의 결의로 이사회 산하에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②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설치·운영하고 그 내용을 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③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, 회장은 이를 즉시 본회 회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6조(폐지) ①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폐지한다. 다만, 특별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지한 것으로 본다.

1. 존속기간의 만료
2. 설치목적의 달성
3. 설치근거의 실효

② 위원회가 폐지된 경우, 회장은 이를 즉시 본회 회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7조(구성)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1. 회장
2. 부회장
3. 상임이사
4. 감사
5. 계리연구원장
6. 사무국장

②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회장, 간사는 사무국장이며 감사와 사무국장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으로, 본회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는 사람
2. 감사 1인으로,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
3. 위원 적정 수 이내로,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<개정 2026.03.27.>

제8조(임기) 위원회 위원장·간사·위원의 임기는 선임 후 제2차년도의 정기 총회 종료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9조(위원회 구성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기타 위원장이 유고 또는 공석인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2. 위원은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의안이 심의되도록 하여야 한다.
3.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 준비, 소집통보, 회의록 작성 등 제반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0조(소집) ①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 단, 산하위원회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26.03.27.>

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이사회에 요청이 있는 경우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3.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

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회의 일시,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부의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업무계획) 산하위원회는 매 사업년도의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사업년도 개시 전 집행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12조(보고) ① 산하위원회는 주요 업무 경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② 집행위원회는 산하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재심토록 조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6.03.27.>

③ 회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의안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1절 집행위원회

제13조(목적) 집행위원회는 회무를 총괄하고 회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14조(역할)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03.27.>

1.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 사전 심의
2. 회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·의결
3. 정책·감독 당국 및 기타 유관기관의 자문 요청에 대한 검토·답신과 본회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건의
4. 본회의 주요 사업 및 현안 과제의 기획·추진·대응·조정
5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

제2절 계리실무기준위원회

제15조(목적) 계리실무기준위원회는 각종 계리실무 관련 기준 등을 제시하고 회원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16조(역할) 계리실무기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03.27.>

1. 한국 채택 국제계리실무기준의 제·개정안 마련
2. 계리실무 관련 가이드라인·매뉴얼 등의 제·개정안 검토·마련
3. 계리실무 관련 현안과제 검토 및 의견 제시

4. 계리실무 관련 실무사례 작성 및 회원 교육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절 회원관리위원회

제17조(목적) 회원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체계적 관리와 회원 관련 내규의 운영을 통하여 회원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18조(역할) 회원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03.27.>

1. 회원 등록·자격 유지 등 회원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2. 회원 관련 내규 등의 제·개정안 마련 및 관리
3. 회원 참여 행사의 기획 및 운영
4. 회원 대상 홍보 및 회무 관련 정보 제공
5. 회원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 방안 마련
6. 회원 Volunteer 제도 관리
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절 재무위원회

제19조(목적) 재무위원회는 본회의 자산 운용과 예산·회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,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본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20조(역할) 재무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03.27.>

1.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의 편성·집행의 적정성 검토
2. 본회의 자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의 수립과 점검
3. 회비 부과·징수 및 미납 회비에 대한 관리·조치
4. 본회의 재원 확충 및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의 검토
5. 결산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 분석
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절 교육위원회

제21조(목적) 교육위원회는 회원의 전문성 향상과 지속적 역량 개발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22조(역할)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26.03.27.>

1. 회원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·연수의 기획 및 운영
2. 회원 보수교육 기준의 마련 및 보수교육 과정의 운영·관리
3. 보험계리사 시험 실라버스 제·개정안 마련
4.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 필요사항 검토 및 건의
5. 국내외 교육·자격제도 동향의 조사·분석
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절 국제위원회

제23조(목적) 국제위원회는 해외 계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동향의 체계적 파악, 그리고 국제 계리 관련 행사의 유치·주관을 통하여 본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회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24조(역할) 국제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03.27.>

1. 해외 계리 관련 기관과의 교류·협력
2. 계리 관련 국제 회의·행사의 유치·주관 및 참가 지원
3. 국제 계리제도, 규제 및 직무 관련 글로벌 동향의 조사·분석
4. 해외 계리사의 역할·업무분야 및 해외 계리시장 동향 조사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절 보험회계위원회

제25조(목적) 보험회계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재무보고에 관한 계리적 관점과 관련 기준의 해석·적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하여 보험회계의 신뢰성

과 일관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26조(역할) 보험회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03.27.>

1. 국제회계기준(IFRS17 등) 및 보험회계 관련 기준·지침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
2. 보험회계 관련 주요 현안·쟁점의 조사·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
3. 보험회계 실무사례 및 교육자료의 작성·제공
4. 보험회계 관련 업무 품질 및 실무 일관성 제고를 위한 활동
5. 국내외 보험회계 동향 조사 및 회원 대상 정보 제공
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절 리스크관리위원회

제27조(목적)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계리 업무와 관련된 전 영역의 위험관리 및 건전성 규제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실무 적용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회원의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28조(역할)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03.27.>

1. K-ICS 등 건전성 규제 및 계리 관련 리스크관리 기준·방식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
2. 계리 관련 주요 위험 분야의 현안·쟁점 조사·분석
3. 리스크관리 관련 실무사례, 분석자료 및 참고자료의 작성·제공
4. 리스크관리·건전성 규제·리스크모델링 등 국내외 동향 조사 및 회원 대상 정보 제공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장 사무국

제29조(구성) ① 사무국은 정관 제30조에서 정한 상임이사 1인, 사무국장 1인 및 사무직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- ② 사무국은 본회의 발전과 회원 권익 제고를 위해 본회의 회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행정·재정·위원회·특별기구 지원 등 제반 실무를 수행한다.
- ③ 상임이사는 본회의 주요 회무 운영을 총괄하며, 사무국 업무를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6.03.27.>
- ④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관리·운영한다.

제30조(업무)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총회,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
- 2. 산하위원회, 특별위원회 및 특별기구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
- 3. 업무계획 작성, 연간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업무
- 4. 정관, 내규 및 각종 규정 관리 및 제·개정안 마련
- 5. 본회 홈페이지 및 전산채널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
- 6. 회원가입, 회원명부 관리 및 회원 서비스 등에 관한 업무
- 7. 회비납부, 기부금 등 기타 수익의 관리
- 8. 직원의 인사, 복무 및 급여의 관리
- 9. 문서의 수발, 보관 및 직인 관리
- 10. 기타 본회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

제4장 특별기구

제31조(목적 및 종류) 특별기구는 본회의 핵심 사업 수행 및 전문 분야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로서,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6.03.27.>

- 1. 계리연구원
- 2. 계리법인협의회

제1절 계리연구원

제32조(구성) ① 계리연구원 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② 계리연구원 원장은 계리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, 본회 전문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33조(역할) 계리연구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03.27.>

1. 계리 관련 연구
2. 계리 관련 외부 용역 과제의 수행 및 지원
3. 계리 관련 학술대회·세미나·포럼 등의 기획·운영
4. 계리 관련 외부 학회 등과의 교류·협력
5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절 계리법인협의회

제34조(구성) ① 계리법인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간사는 상임이사가 수행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② 계리법인협의회 위원은 본회 계리법인 회원사 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6.03.27.>

제35조(역할) 계리법인협의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03.27.>

1. 계리법인 공동 현안 논의 및 의견 조율
2. 계리법인 적용 공통 기준 등에 관한 협의
3. 계리법인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의·대응을 위한 의견 수렴
4. 계리법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논의
5.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6조(준용규정) 기타 특별위원회 및 특별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199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은 1994년 6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③ 이 규정은 2001년 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④ 이 규정은 2006년 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- ⑤ 이 규정은 2012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⑥ 이 규정은 2014년 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⑦ 이 규정은 2014년 1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⑧ 이 규정은 2015년 9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⑨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⑩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⑪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⑫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⑬ 이 규정은 2024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⑭ 이 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